

의안번호	2202781
의 퇴 인	문정복 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계번호	24C28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저. (생략) ※100세대→300세대	의무규정
2	안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항)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1천분의 8 → 1천분의 4	의무규정
4	안 제6조 (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3항)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¹⁾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안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안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동 법에서 정의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기준, 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유,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분담 등을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2조제2호) 개정안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정의를 종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가 축소되며²⁾, 이에 따라 법 제5조 및 법 제5의2에 따라 징수되는 부담금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5조제5항)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 대상에 “분양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시킬 경우 법 시행 이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 등에 의해 면제 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따른 부담금 수입액이 변동될 수 있음

1) 현행법은 학교를 증축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원에 대한 재원부담주체에 대한 내용이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2) 법 제3조제2항은 동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기준에 못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는 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동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인 300세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 예외 사항을 제외할 경우)미만의 경우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됨

- (안 제5조의2제2항)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금 기준이 종전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낮아질 경우 부담금 수입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후의 개발사업 규모 및 분양가격 등과 취학 인구 감소 지역과 관련되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등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에 한계가 있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수입감소 규모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 지역 및 분양가격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취학 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 따른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대통령령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
 - 참고로 2021년 이후 법 제5조제5항제2호를 사유로 부담금을 면제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대통령령의 내용 및 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 등에 따라 부담금 면제 규모 등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1] 법 제5조제5항제2호(취학인구감소)를 사유로 부담금을 면제받은 내역
: 2021년~2024년 8월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2021	19	9,958
2022	16	4,364
2023	14	12,100
2024(~8월)	15	13,476

자료: 교육부

- 또한, 2021년 이후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천분의 8을 부담금으로 징수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해당 부담금은 개발사업지 및 분양가격 등에 따라 증감될 것이므로 이의 추이를 추계의 근거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표 2] 법 제5조의2제2항제1호(공동주택)에 따른 부담금 징수내역: 2021년~2024년 8월
(단위: 백만원)

연 도	징수액
2021	357,855
2022	241,667
2023	12,961
2024(~8월)	158,881

자료: 교육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향후 개발사업이 시행될 지역 및 개발사업의 규모, 분양가격 및 대통령령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하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